

신청인 Offeror	회원번호 Membership Number			지사(센터) Center	
	성명 Name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이메일 e-mail	
	연락처 Contact	주택 Home			
핸드폰 Mobile Phone					
주소 Address	□□□□□□				

거래은행 Bank	은행명 Bank			예금주 Account Holder	
	계좌번호 Account Number				

추천인 Recommender	성명 Name			회원번호 Membership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락처 Contact										

후원인 Sponsor	성명 Name			회원번호 Membership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락처 Contact										

- 본 회원가입신청서는 (주)셀플렉스의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서입니다.
- 신청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회원수첩 수령여부  수령  미수령
- 인적사항 : 등록회원의 회원번호(ID)는 등록과 동시에 배정 받습니다. 회원번호는 등록회원의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사용될 것입니다. 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등록회원의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전체 계약을 무효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상의 ID는 회원번호이며 홈페이지 개인정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다단계판매원등록신청서 원본은 (주)셀플렉스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신청인이 보관함

- 위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범위내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제공·이용하도록 동의합니다.
- 등록신청서의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자필로 서명하십시오

일자 Date	20	년	월	일	신청인 Offeror	(서명/Sign)
------------	----	---	---	---	----------------	-----------

회사기재란	접수자	전산입력자
-------	-----	-------

● **다단계판매매원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다단계판매매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주)셀플렉스에 신속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판매매원등록**

(주)셀플렉스에 다단계판매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주)셀플렉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다단계판매매원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다단계판매매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다단계판매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법인
3. (주)셀플렉스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과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
5. 미성년자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주)셀플렉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단계판매매원 자격 취득**

신청인은 (주)셀플렉스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단계판매매원 수첩, 다단계판매매원 안내서 및 기타 사항을 교부한 후에 한하여 자신이 다단계 판매매원으로 인정될 것임을 숙지하십시오.

● **규정 준수**

신청인은 다단계판매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주)셀플렉스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금지행위**

(주)셀플렉스의 다단계판매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법에서 정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매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4.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2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매원 탈퇴**

탈퇴를 원하는 다단계판매매원은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다단계판매매원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주)셀플렉스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매원은 단단계 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다단계판매매원 포함)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원(전화: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매원이 (주)셀플렉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사항을 포함한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주)셀플렉스에 등록된 다단계판매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등록된 다단계판매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매원에 대하여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주)셀플렉스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단계판매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공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다단계판매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다단계판매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www.kossa.or.kr](http://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셀플렉스 귀중		셀플렉스 회원 탈퇴 신청서		등록일	년	월	일
성 명	.....	회원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탈퇴사유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주)셀플렉스의 다단계판매매원 탈퇴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당사는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매원의 개인정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